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77

발의연월일: 2021. 6. 24.

발 의 자:김상훈·조수진·정진석

김정재 · 김예지 · 전주혜

곽상도・조명희・한기호

김승수 · 박대출 · 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 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를 "제3호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5는 2024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로,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u>제3호, 제4</u>	<u>제3호 및</u>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
<u>하며,</u>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의5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12월 31일까지 <u>실시협약이</u>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u>실시협약</u>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